

국방부장관 및 기재부장관 등에 대한 특가법 위반죄

고발 건과 관련하여 고발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가합니다.

1. 2020년도에 집행된 방위비분담금액의 최종액수(7451억 원)가 확인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고발장은 2020년도에 집행된 방위비분담금 예산이 76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발장 제출 시점(2021.1.13.)에서는 국방부가 2020년도에 집행한 방위비분담금 예산의 최종 집계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 불가불 2020년도 방위비분담의 집행액을 추정치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 추정치 7600억 원도 임의로 고발인이 추정한 것은 아니며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추정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국방부는 2020년도에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이 집행된 사실을 국방부 홈페이지(재정정보공개/월별세출현황)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2020년도 국방예산에서 지출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급액도 3144억 원임을 공식확인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국방예산에서 11차 특별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게 선지급된 방위비분담금은 총 7451억 원입니다.

2. 과거 8차/9차/10차 특별협정에 근거하여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을 집행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집행입니다

국방부는 2020년도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을 집행한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10차 특별협정 제7조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평화통일연구소의

정보공개청구(2020.10.20.)에 대한 답변(2020.10.30.)을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제10차 특별협정 제7조는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의 합의된 절차에 따라 매년 선정되었으나 이 협정 종료일에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은 모든 군수비용 분담 지원분 또는 군사건설 사업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고발장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는 2020년도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의 집행의 법적 근거를 묻는 정보공개청구를 다시 하였고 그에 대해서 국방부는 2021년 4월 7일 이전과 같은 취지로 10차 특별협정 제7조 및 제8차/9차 특별협정 제5조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제8차 및 제9차 특별협정 제5조는 10차 특별협정 제7조와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10차 협정 제7조는 10차 협정 기간(2019.1.1.~12.31)에 예산에 편성된 군사건설 또는 군수지원 사업이 끝나지 않을 경우 협정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사업자체가 중단되거나 폐기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는 일반적 조항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제7조가 10차 협정에서 정한 1조389억 원의 방위비분담금의 한도를 넘겨서까지 2019년에 편성된 군사건설사업 및 군수지원사업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수년간의 모든 비용을 한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10차 협정의 협정금액은 1조389억 원이며 이 돈은 2019년에 이월액 184억 원과 불용액 78억 원을 제외하고 다 집행되었습니다. 10차 협정 7조에 따른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의 2020년도 계속 집행은 2019년에 2020년으로 이월된 184억 원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에 10차 협정 7조는 2020년도 4,307억 원의 집행 근거가 될 수 없기에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로 2020년에 4307억 원을 집행한 것은 불법입니다.

3. 11차 특별협정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금(미집행금)을 11차 특별협정 기간에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 미집행현물지원분 개념에 대한 고발인 진술의 보완·수정

국방부에서 말하는 ‘미집행현물지원분’이란 개념에 대한 고발인의 진술을 보완 및 수정하고자 합니다. 애초 고발인은 ‘미집행현물지원분’이란 개념에 대해서 10차 특별협정 제3조¹⁾를 근거로 다음연도로의 ‘이월액’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고발장(15쪽)에 적시하였습니다. 10차 특별협정 제3조에서는 ‘미집행현물지원분’을 ‘이월액’과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집행현물지원분’이라 할 때 그 개념은 ‘이월액’을 포함해서 미국에게 지급되지 않은 방위비분담금을 총칭해서 하는 말로 이해됩니다. 이월액은 미집행현물지원분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방부가 주장하는 ‘미집행현물지원분’은 10차 협정 제3조에서 지칭되는 다음 연도로의 ‘이월액’과는 범주가 다른 것으로 과거 8차나 9차, 10차 특별협정에서 정해진 협정액 가운데 미국에게 지급되지 않은 방위비분담금을 가리킵니다. 국방부가 말하는 ‘미집행현물지원분’은 과거 8차, 9차,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기간에 협정금액보다 줄여서 예산을 편성한데서 생긴 감액분(협정금액－예산편성액) 또는 불용액 등을 가리키는 말로 ‘이월액’과는 다른 범주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미지급금(미집행현물지원분)이 2019년 말 현재 군사건설비가 9079억 원, 군수지원비가 910억 원이며 이를

1) “연도 말에 **현물 지원분**이 남아있을 경우 그러한 지원분은 이 협정의 이행약정에서 달리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당사자 관계당국은 **미집행 지원분**의 최소화를 위하여 절차 수립을 포함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10차 협정 제3조)

합쳐서 9989억 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미지급현물지원분 액수에 대해서는 평화통일연구소의 정보공개청구(2020.10.)에 대해서 국방부가 답변한 것입니다.

물론 국방부가 말하는 것처럼 ‘미집행현물지원분’을 과거 특별협정 하에서 발생한 ‘미지급금’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2020년도에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을 과거 ‘미지급금’의 명목으로 집행한 것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설사 8차, 9차, 10차 특별협정 하에서 발생한 미지급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가 끝나 한국이 이 미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법적으로 없고 또 이미 시효가 끝난 협정을 근거로 2020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2) 11차 특별협정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금(미집행금)을 11차 특별협정 기간에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국방부는 2020년에 집행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이 8차, 9차, 10차 특별협정 기간에 발생한 미지급금을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8차·9차·10차 특별협정 기간에 발생한 미지급금을 11차 특별협정 기간인 2020년도에 지급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며 적법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8차 특별협정(SMA)은 유효기간이 2009~2013년이고 9차 SMA는 유효기간이 2014~2018년이며 10차 SMA는 유효기간이 2019년 한 해(2019.1.1.~2019.12.31.)로 그 어느 것이나 2020년 시점에서는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매 특별협정이 종료되어 효력이 상실되면 매 특별협정 기간에 발생한 미지급금 지급 의무도 소멸합니다. 따라서 11차 특별협정 기간인 2020년도에 이미 효력

을 상실한 8차, 9차, 10차 협정기간 발생한 미지급금을 국방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에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불법부당한 것입니다.

또 국방부 주장대로 이미 종료된 8차, 9차,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법적인 의무에 의해서 11차 특별협정 기간에 한국이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을 집행한 것이라면 한국은 2개, 3개의 특별협정들에 의해 2중, 3중의 의무를 계속, 동시에 지게 됩니다. 즉 과거 종료된 2, 3개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새로 체결된 특별협정에 의해서 동시에 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는 부당합니다. 이는 또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한시적인 '특별조치' 협정임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용인될 수 없습니다.

4.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의 집행은 그 불법성이 11차 특별협정 체결에 의해서 면제될 수 없습니다.

11차 특별협정 제7조는 “이 협정은 나중의 서면통보일자에 발효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라고 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1차 특별협정이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2020년도에 행해진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불법성이 면제(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0년도 방위비분담사업 예산은 11차 특별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예산편성부터 집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다 끝났습니다. 다시말하면 11차 특별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예산이 집행이 완료된 뒤여서 2020년에 기집행된 인건비 3144억 원과 군사건설비 3306억 원과

군수지원비 1001억 원이 국가재정법과 헌법의 국회예산심의확정권과 조약비준 동의권을 위배해 불법적으로 집행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바꿀 수 없으며 바뀌 지지 않습니다.

그 동안 10차례 체결되었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사례를 보면 협상의 지연에 따른 특별협정의 소급적용 사례는 6번(4차, 5차, 6차, 7차, 9차, 10차 협정)이 있었습니다. 그 6번의 사례는 모두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 새로 체결되고 그 협정이 국회비준을 받아 발효되는 때에도 방위비분담금 예산은 집행이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었습니다. 6번 모두 해당 회계연도 방위비분담금의 집행이 시작된지 얼마 안 되거나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소급적용의 요건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예산 4307억 원의 경우는 이전 6번의 사례와는 다릅니다. 2020년도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의 경우 11차 협정이 체결되기 훨씬 전에 집행이 완료되고 회계연도도 끝나 11차 특별협정의 소급적용의 요건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한미소파 제5조가 적용됩니다. 한미소파 제5조에 따르면 미국이 주한미군 경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은 한국이 부담해서는 안 될 지출을 한국이 한 것이 됩니다.

2020년도에 대해서 효력을 갖는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규정은 제2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조는 “2020년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1조389억원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2조는 이어서 “당사자는 이 협정 발효 시 2020년 인건비 분담 지원분 3,144억원이 이미 지급되었다는 것과 나머지 비용 분담 항목에 해당하는 2020년 지원분이 이월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한국이 2020년도에 지급할 방위비분담금이 1조389억

원으로 확정하고 또 2020년도에 인건비 3144억 원이 집행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을 뿐으로 그것에 의해서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불법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님은 물론입니다.

제2조를 보면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은 1조389억 원이고 이중 인건비 3144억 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집행되지 않은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항목의 7245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 따르면 2020년도에 집행된 군사건설비 3306억 원과 군수지원비 1001억 원은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1조389억 원의 산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누락되어 있습니다.

국방부는 2020년도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의 집행이 과거 8차, 9차, 10차 특별협정 하에서 발생한 미지급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1조389억 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 국민을 속이는 짓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8차, 9차,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하에서 발생한 미지급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협정 유효기간이 끝나 한국이 미지급금을 2020년에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과거 발생한 미지급금을 유효기간이 지난 뒤 지급한 전례도 없습니다. 미지급금을 지급했다는 국방부 주장은 둘러대는 말일 뿐입니다.

10차 특별협정 제2조가 2020년도에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이 집행된 것을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산정에서 누락시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2020년도에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이 집행된 사실 자체는 부정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재정법과 헌법을 위배해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이 불법으로 집행된 사실도 없어지거나 부인될 수 없습니다.